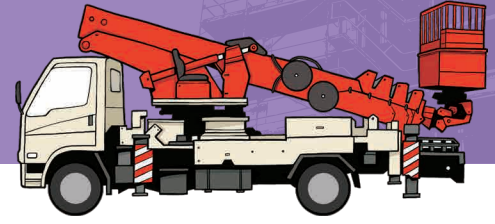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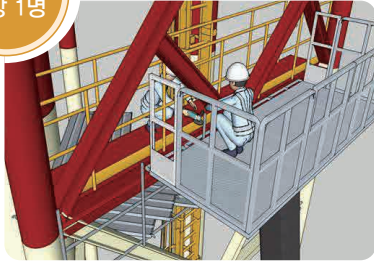
고소작업대 (차량탑재형) 안전난간 해체 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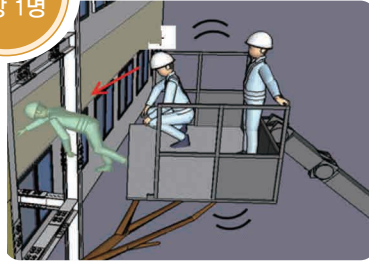
중대재해 발생현황

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의 최근 6년간 총 재해 건수는 55건(사망 65명, 부상 16명)
그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2건(사망 22명)으로 약 40% 차지

2019. 1.
사망 1명



2018. 4.
사망 1명



2017. 9.
사망 1명



<산업안전보건법>

제34조의4(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의 제조·수입·사용 등의 금지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은 제조·수입·양도·대여·사용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.

※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

2.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 [별표 7]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>

42.(낙하 또는 추락방호조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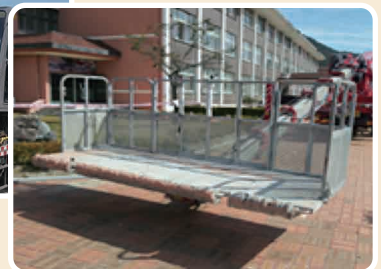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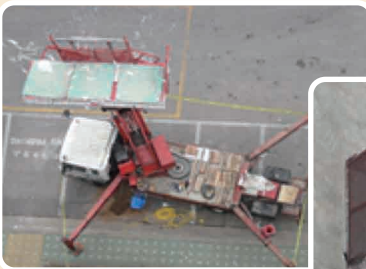
- 가.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나. 안전난간은 작업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, 최소한 1.0m 이상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0.1m 이상 높이의 발끝 막이판, 상부난간대나 발끝 막이판으로부터 0.55m 이내에 중간대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다. 안전난간은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.5m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최중 하중에 영구 변형 없이 견뎌야 한다.
- 라. 작업대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.

관련법령



안전인증 기준 위반사례

안전난간(전면) 미설치



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안전작업지침

“안전난간을 해체하지 마세요”



1

고소작업대
(차량탑재형)을
사용할 때에는
보호구 착용

▶ 보호구(안전대 및 안전모) 착용을
확인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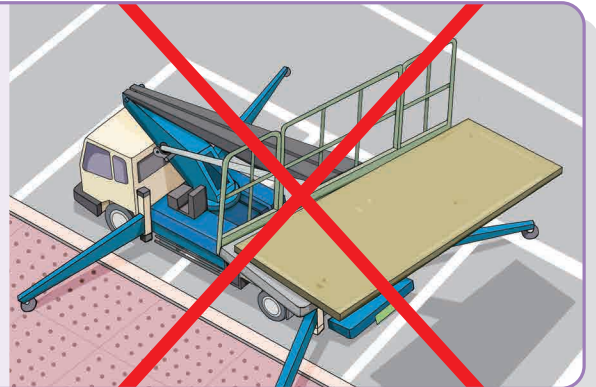
※ 안전대는 작업대에서 분리되지 않는
안전난간(후면부 등)에 설치



2

고소작업대
(차량탑재형)의
안전난간
해체 금지

▶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의
안전난간(전면, 측면 등)
해체 금지



3

안전난간의
일부 해체가
불가피한 작업

▶ 외장(석재, 유리) 부착작업 등 안전난간의 일부해체가 불가피한 작업의 경우
①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②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
③ 조작자 이외의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휘·감독하에 작업 실시

